

#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주차장조례개정에 관한 청원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 10. 11.      제천시장애인협회 회장 김근수
- 회부일 : 2006. 10. 18.
- 상정일 : 2006. 10. 25(제12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 2. 청원소개 (제안설명자 : 박성하 의원)

#### 가. 청원사유

- 제천시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창출을 위하여 제천시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도록 조례개정을 요망하는 청원임

#### 나. 주요내용

- 지난 '86년~'96년동안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을 수탁하여, 약 30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경제적 자립은 물론 삶의 발판이 되었음
- '97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자립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봄.
- 제천시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자격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요망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동수)

- 먼저 청원의 내용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제천시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위탁관리 대상자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
- 현행 조례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서는 수의계약을 적용할 수 없음.

- 또한, 특정집단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주차장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단체등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직접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조례에서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에 그쳐야 함.
- 그러나 제천시주차장조례가 당초('98년 이전)에는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98년 11월 제천시장이 위탁관리시 수탁대상자 결정을 일반경쟁입찰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음.
- 따라서, 제천시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상자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조례개정 사항에 대하여 그 과정을 들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98년 1월 14일 현재 제천시주차장조례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구분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수의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

위 조례에서 공영주차장위탁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은 수의계약, 경쟁 계약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98년9월15일 ~9월17일 개최된 제40회 임시회의시 제천시장은 의안번호 제440호로 제천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주요내용 : 주차요금의 감면, 주차요금의 가산금, 무료 개방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기간연장등)을 제출하였으나,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의 주차요금 감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징수규정 마련등에 대하여 논란끝에 보류처리 되었음.
- '98년11월11일 ~11월18일 개최된 제43회 임시회의시 제천시장은 의안번호 제466호로 제천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음.

#### -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주요내용 -

- ※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①항에서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되,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라는 조항외 6개의 조항을 개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음.
- 본 수정안에 대하여 '98년11월12일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정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 '98년11월18일 09:00본회의에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후 출석 위원 13명중 찬성 11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천시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 당초에는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고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을 위의 표와 같이 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 조항에 대해서는 '98년 11월 제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수정안 내용 :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되,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을 제출하였고,
- 수정안이 '98년 11월 12일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98년 1월 18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제천시공영주차장 위탁관리시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98년 이전에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98년 11월 제43회 임시회에서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토록 제천시장이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의회에서도 이를 심도있게 심의한 후 가결된 사항으로 제천시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요구한 청원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본 조항에 대하여 조례개정 과정 및 주차장위탁 현황과 제반 문제점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건은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의거 의회에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천시장에게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4. 질의 답변 요지

##### 가. 질의요지

- 86~96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운영한바 있고, 97년부터 이후 수입액과 수의계약의 산출 비교 데이터와 수의계약조항 추가시 문제점은?  
(김병창의원)
- 장애인의 복지향상은 반드시 필요하며 다양한 복지시책 발굴등 장애인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본 청원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계획은? (유영화의원)
- 수의계약 조항 추가시 수의계약은 모든 주차장이 대상인지 또는 일부 주차장이 대상인지 여부? (김명섭의원)

- 장애인에 대한 획기적인 좋은 방안과 대안은 없는지?(조덕희의원)

#### 나. 답변요지 < 교통과장 최종인 >

- 운영면수는 18개소 7,064면으로 2005년 수입은 13억4천만원으로 2년마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정가와 낙찰가는 각각 4억과 13억4천 임.
- 만일 수의계약시 예정가에 맞게 4억에 수의계약 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시 수입이 많은 특정지역의 장소를 어느 단체에게 수탁하여야 할지 문제점과 이에 따른 특혜시비 발생 우려 있음.
- 비영리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음으로 이러한 단체의 주차장 수탁시 어떠한 방법으로 수용을 해야할지 상당한 고민이 예상되며, 위 청원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어느장소는 수의계약, 어느장소는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 없음으로 모든 주차장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다만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있게 수탁자 선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됨.
- 저희 부서에서 결정하기는 어려우나 여러가지 전향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고 고민하도록 하겠음.

### 5. 소 수 의 견

“ 없 음 ”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 7. 심 사 내 용

“ 없 음 ”

### 8. 심 사 결 과

-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주차장조례개정에 관한 청원의견서 1부. 끝.

##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주차장조례개정에 관한 청원의견서

-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 제천시 고암동 145-13(고암농공단지내) 제천시장애인협회 회장 김근수씨가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박성하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2006. 10. 11. 제천시의회에 제출한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주차장조례개정에 관한 청원으로,
  - 제천시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창출을 위하여 제천시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도록 조례개정을 요망하는 것이 그 요지임
- 제천시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시 '98년이전에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나, '98년 11월 관리수탁자 선정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토록 조례가 개정 되었고,
- 제천시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기를 요망하는 청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제천시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함으로,
- 현재 제천시공영주차장의 위탁현황과 운영실태, 타시군의 운영상황, 제반 문제점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본 청원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청원인 만큼 장애인의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관련 법령들을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의회는 관계법령이나 행정의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위 청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8조와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 의견과 함께 동 청원을 이송하오니 적극 처리하시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